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102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문범

피 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해영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변 론 종 결 2021. 4. 8.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36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10. 12.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7. 10. 11.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은 2016. 10. 12. 위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2) D의 신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은 2017. 9. 28., 2018. 10. 4. 2회에 걸쳐 연장되었다.

3) D에게 2019. 10. 1. ‘신용관리정보등록(국세채납포함)’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6.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641,3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법적절차비용 5,258,468원을 지출하였고, D에 대한 미수보증료 150,680원이 발생하였다.

나. C와 주식회사 E 사이의 계약 등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는 2018. 8. 27. D이 수주한 여객선 건조 프로젝트에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면서, E이 C에게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3채를 대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724,600,000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2018. 8. 27. E 소유의 F건물 G동 H호, I호와 피고 A 소유의 F건물 J호에 관하여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는 2018. 8. 30. 피고 A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8. 30. 접수 제36068호로 2018. 8. 2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2018. 8. 30.자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부가등기로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2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2019. 2. 21.자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2. 21.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9. 2. 15.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6111호로 2019. 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9. 2. 21.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피고 A은 E의 이사로 E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E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K는 피고 B의 전 대표이사(2018. 12. 31.사임)이고, 피고 B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다. D의 회생절차

D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67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악화를 감지하고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C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C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먼저 이루어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8. 8. 30.자 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9. 2. 21.자 본등기가 순차로 마쳐졌으므로, 위 각 등기의 원인 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8. 8. 30.자 가등기가 마쳐진 후 2019. 2. 21. 위 가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 A이 근무하는 E과 임원 및 주주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 B에게 2019. 2. 21.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수반된 일련의 행위의 일부로 판단되므로, 일련의 행위 중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C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행위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8. 8. 27. 체결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10. 1.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다시 2개월이 지난 2019. 12.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고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C에 대한 보증채권을 취득하였다.

② 중소기업은행이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인 2019. 9. 11.경부터 이자를 연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어 2018. 8. 30.자 가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8. 10. 4.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9. 10. 11.까지 연장해주기도 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별지1

부동산 목록

<합병 후>

1. 거제시 L 전 6,994㎡
2. 거제시 M 전 184㎡
3. 거제시 N 전 84㎡

<합병 전>

1. 거제시 L 전 393㎡
2. 거제시 O 전 421㎡
3. 거제시 P 전 203㎡
4. 거제시 Q 전 172㎡
5. 거제시 R 전 740㎡
6. 거제시 S 전 694㎡
7. 거제시 T 전 519㎡
8. 거제시 U 전 2,284㎡
9. 거제시 V 전 1,568㎡
10. 거제시 M 전 184㎡
11. 거제시 N 전 84㎡. 끝.

별지2

부동산 목록

1. 거제시 W 입야 221㎡
2. 거제시 X 입야 1,466㎡
3. 거제시 Y 입야 123㎡. 끝.